경상남도 지역인재육성지원사업
변 경 협 약 서

○ 사 업 명 : 경상남도 지역인재육성지원사업

○ 총 사업기간 : 2025. 11. 28. ~ 2030. 2. 28.

○ 총 사 업 비 : 금3,075,000,000(금삼십억칠천오백만원정)

※ 단, 사업기간 및 사업비는 중앙부처 사업관리 기준 및 평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○ 협약 당사자

- 지방자치단체 : 경상남도지사
- 참여기관 : 경상남도교육감
- 추진대학 : 4개 대학(이하 "주관대학" 경상국립대학교 총장, 이하 "참여대학" 국립창원대학교 총장, 경남대학교 총장, 인제대학교 총장)
- 전담기관 : 재단법인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(경남RISE센터장)

위 경상남도 지역인재육성지원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경상남도지사(이하 "경상남도"), 경상남도교육감(이하 "교육청"), 각 추진대학의 총장(이하 "주관대학" 경상국립대학교 총장, 이하 "참여대학" 국립창원대학교 총장, 경남대학교 총장, 인제대학교 총장), 재단법인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(이하 "경남RISE센터")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사업계획) ① 경상남도 지역인재육성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대학이 최종 수정 제출한 사업계획서(이하 "사업계획"이라 한다)의 내용을 사업계획으로 한다.

② 최종 수정 제출한 "사업계획"이 사업책임자, 사업 추진계획 및 예산이 변경되어야 할 때는 경남RISE센터의 변경 요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2조(협약기간) 협약일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030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. 사업 종료 시 사업 정리 필요 기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.

① 협약기간은 경남RISE센터에서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② 협약기간은 연차평가, 중간평가 결과 협약이 해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제외한 기존 협약사항이 동일한 조건으로 다음 사업연도까지 연장된 것으로 본다. 단, 평가결과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향후 수정협약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.

제3조(사업의 수행) 추진대학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사업비) ① 경남RISE센터는 대학에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급한다.

② 사업비 지급 시기 및 방식은 경남RISE센터가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, 사업비의 규모는 추진대학이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급 규모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.

③ 성과평가(자체평가 등)를 통한 성과목표 달성률에 따라 차년도 협약 시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다.

제5조(권한과 책임) 경상남도, 경상남도교육청, 추진대학, 경남RISE센터는 「지역인재육성 지원사업 관리·운영 지침」(이하 "운영 지침"이라 한다) 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.

① *경상남도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.*

1. 사업 총괄 관리 및 운영
2. 사업계획 수립 총괄
3. 지방비 대응 자금 매칭 및 예산 배분
4. 성과 종합 분석 및 환류, 성과 홍보

② *경상남도교육청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.*

1. 사업계획 공동 수립
2.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 및 지원
3. 고교 대상 사업성과(관리, 활용 및 확산)
4. 정보·자원 등을 포함한 공유·협력·지원

③ *추진대학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.*

1. 사업계획서 등 협약체결을 위한 신청 서류제출에 관한 사항
2. 사업의 협약체결, 참여 및 수행 등 전반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
3. 컨소시엄 주관대학으로 참여대학과의 컨소시엄 협약 및 관리에 관한 사항
4. 컨소시엄 주관대학으로 총괄 관리, 사업비 재교부, 집행관리 실적 보고 등 사업 추진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

5. 컨소시엄 참여대학으로 사업추진, 집행, 실적 보고 등 사업추진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
6. 사업추진 인력·시설 확보 및 보안관리(개인정보보호 등)에 관한 사항
7. 사업보고서 및 기초자료 제출·관리 등 각종 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
8. 성과관리(자체평가), 사업수행 결과의 활용 및 성과확산에 관한 사항
9. 사업비의 정산 및 정산금 반납 등에 관한 사항
10. 그 밖의 사업과 관련한 사안 발생 시, 경남RISE센터로 통보에 관한 사항

④ 경남RISE센터는 *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.*

1. 컨소시엄 구성 및 협의를 통한 공동 사업계획 수립 지원
2. 지역인재육성지원사업의 사업·성과관리
3. 자체성과평가 및 성과 공유·확산
4. 사업비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
5.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

제6조(지원 조건) 추진대학은 사업기간 동안 "운영 지침"에서 정한 사업 신청 적격 요건과 경남RISE센터가 정한 지원 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7조(사업 목표) ① 추진대학은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사항에 관한 연도별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추진대학은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컨설팅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고,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

③ 경남RISE센터는 성과평가(중간 점검, 연차 평가)를 통해 목표 달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추진대학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8조(사업비의 관리) ① 추진대학은 사업 기간 내 "운영 지침"에 따라 사업비를 성실히 집행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추진대학은 대학 회계(교비회계) 또는 산학협력단회계를 선택하여 "00대학교경남지역인재육성사업비계정"을 설치하여 사업비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.

③ 컨소시엄 주관대학은 컨소시엄 총괄 사업비 집행·관리 책임 주체로 컨소시엄 참여대학이 목적에 맞게 사업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집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.

④ 추진대학은 사업 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 경남RISE센터에 정산 결과를 보고하고 사용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.

⑤ 추진대학은 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경남RISE센터에서 실시하는 정산 및 각종 권한 있는 기관의 감사로 인해 발생하는 처분 결과에 따른 사업비 반환 의무를 가진다.

제9조(성과관리 및 평가) ① 추진대학의 사업성과 달성을 위하여 주관대학은 실적과 성과를 관리하고 이를 총괄 취합, 조정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.

② 경남RISE센터는 사업추진 현황 점검, 성과관리, 자체 성과평가 등을 시행하기 위해 추진대학에 중간, 연차, 수시 보고 등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경남RISE센터는 제출된 보고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면담, 현장점검, 서면 평가, 대면 평가, 발표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
④ 경남RISE센터는 추진대학의 자체점검위원회 점검 결과를 반영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.

⑤ 경남RISE센터는 컨설팅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목표, 사업비, 사업 내용 등 사업계획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⑥ 경남RISE센터는 추진대학이 사업 기간 내 달성한 목표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.

제10조(결과물의 귀속) ① 본 협약에서 "결과물"이란 본 협약상의 사업수행 또는 사업수행 결과로 발생하는 시설, 설비, 기자재, 장비 등 유형적 결과물 및 기술, 각종 정보, 발견, 발명, 아이디어, 노하우, 샘플, 디자인, 특허권, 특허료, 기술이전료, 산업재산권, 교재개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모두 포함한다.

② 사업의 성과로서 취득한 유·무형적 결과물은 관계 법령 및 본 협약에 따라 추진대학의 소유로 하되, 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11조(협약의 변경) 경남RISE센터는 협약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"운영지침"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12조(협약의 해지) 경남RISE센터는 협약당사자가 주요 협약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"운영지침"이 정한 바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주요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

2. 추진대학이 허위 자료 제출, 청탁, 외부 압력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선정된 경우

3. 사업비 유용 · 횡령 또는 부정 · 비리 발생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추진대학이 중대한 법령 위반을 한 경우

4. 경남RISE센터의 시정 ·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추진대학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,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여 계속적인 사업수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
5. 부도 · 법정관리 · 폐업 · 폐교 등의 사유로 추진대학의 계속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

6. 추진대학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

7.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기관평가 결과 '미인증' 판정을 받은 경우

8. 그 밖에 사업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중대한 상황 변화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13조(수혜 제한) 경남RISE센터는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 중이라도 협약 해지, 사업비 삭감 및 환수, 평가 시 감점 반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목적 외 예산 사용, 횡령 등 부정 · 비리가 확인된 경우

2. 대학재정지원 제한 대학 지정 및 이와 유사한 제재가 확인된 경우

3. 추진대학의 입시 · 학사비리, 총장 · 이사장 및 대학의 주요 보직자가 연루된 부정 · 비리가 확인된 경우

4. 사업기간 중 추진대학의 귀책사유에 따른 사업비 삭감 등이 있는 경우, 당초 협약한 사업계획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자체 부담

제14조 (제출 및 보고의 의무) ① 추진대학은 사업성과 점검 및 평가를 위한 보고서 작성 · 제출 및 점검 · 평가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.

② 경남RISE센터는 사업 관리를 위해 필요 시 관련 자료 등의 제출, 대학 내 사업추진 부서의 면담, 대학에 대한 현지 방문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추진대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15조(사업신청서 등의 공개) 추진대학은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신청서를 "운영 지침" 및 경남RISE센터가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.

제16조(해석) 본 협약 및 관련 제규정 등의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경남RISE센터의 해석에 의한다. 본 협약서는 7통을 작성하여 협약 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2026년 4월 6일

경상남도지사	박 완 수	(인)
경상남도교육감	박 종 훈	(인)
경상국립대학교 총장 (입학처장)	권 진 회 (임 지 영)	(인)
국립창원대학교 총장 (입학취업처장)	박 민 원 (박 상 희)	(인)
경남대학교 총장 (입학처장)	박 재 규 (김 태 완)	(인)
인제대학교 총장 (입학처장)	전 민 현 (김 명 찬)	(인)
재단법인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(경남RISE센터장)	황 태 수 (박 지 현)	(인)